

Q> '23년~24년 참여기업 대상청년 중 "2년 근속 시 지급하는 장기고용인센티브" 지급 요건은?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금(정규직 채용* 후 최초 6개월 이상 근속분)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, 고용관계가 해지되지 않고 2년을 근속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차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를 신청할 수 있음
 - * 기간제 등으로 채용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

- 1회차 지원금 수령 후 2~3회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2년간 고용관계가 유지*되었다면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가능함
 - *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~제8호 해당하는 경우,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봄

- (2년 근속 확인 방법)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2년 근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,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취득·상실내역을 통해 근속을 확인함

- (지원요건)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시,
 - <기업요건> 기업 지원제외 요건(사업운영 지침 II-2) 해당되면 「장기 고용인센티브」 지급 불가함
 - <청년요건>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으로 ①1회차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②2년 근속기간 동안 지원요건(사업운영 지침 III)이 유지되었다면,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가능함

- 1~3회차 지원금 지급기간<정규직 채용 후 12개월> 동안 사업운영 지침의 요건 미충족으로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2년 간 근속하였더라도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불가함

- (부정청구로 인한 참여제한 기업)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도약장려금의 협약이 해지되므로,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불가함
- (고용조정 발생기업) 고용조정 제한기간* 이후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 신청 가능함
 - * 고용조정 제한기간: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
 - 동일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다수인 경우, 각 청년별로 상이한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
 -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에 고용조정이 발생하였다면, 고용조정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「장기 고용인센티브」 신청 불가함
- (중복지원 제한) 도약장려금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는 인건비가 아닌 장기근속에 대한 지원금으로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간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
 - 단,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「장기고용인센티브」를 중복으로 보고 지원제외하는 것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과 별개임
 - * 타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절차를 따를 뿐임
- (지원금 신청 기간)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금 신청시 지원 제외
 - (제출 서류) 장기고용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등(서식1~2), 근속 2년에 대한 증빙자료(재직증명서 등)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